

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,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

- 대통령 주재, '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' 개최

1.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

①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

①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,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.

- ▶ '공정이용 가이드라인' 마련(~'25.11) 및 관련 법령개정 조속 추진
- ▶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·보상체계 마련(~'25년)

②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, 더 많이 개방한다.

- ▶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(~'25년) 및 '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' 마련(~'25.9)
- ▶ 판례·공공저작물 등 공공데이터 법원·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 개방

② 자율주행모빌리티,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

①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.

- ▶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 연내 신속히 추진

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.

- ▶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·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,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(~'25년)
- ▶ 자율차 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

③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·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.

- ▶ (예시1 : 주차로봇) 설치장소, 관리인 상주, 주차구획 크기 규제 등 재정비
- ▶ (예시2 : 건설로봇)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등 재정비

2.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

- ▶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편, 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
- ▶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(9월중 1차 방안 발표)

- 정부는 9.15(월)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, 서울시 성북구 소재)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, 기업 관계자,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-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,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,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.
 - 이번 「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」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,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, 개인정보·노동·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‘거미줄 규제’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.
 -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**과급력 큰 ‘핵심규제’**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.

<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요 >

- 일시 / 장소 : 9.15(월) 14시 30분 /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, 서울시 성북구)
- 참석자 : 총 80여명 ※ KTV(국민방송) 생중계
 - (정부)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(내정자)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, 국무조정실장 등
 - (업계) (주)셀렉트스타 대표이사, (주)코딩 대표이사, (주)카카오 총괄리더,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, (주)마음에이아이 대표, (주)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, (주)라이드플렉스 대표이사, (주)뉴빌리티 대표이사, (주)스캐터랩 변호사, 법무법인(유) 세한 대표변호사 등
 - (전문가·단체) 대학 소속, 출연연구기관,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KDI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 등
 - (국회)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, 권칠승 경제형별·민사책임 합리화TF 단장

- 이번 회의에서는 AI, 자율주행차,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, ‘미래 핵심산업 도약’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.
-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△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△자율주행 모빌리티·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,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.
 -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‘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별 합리화’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①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>

1.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

□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,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.

- (현황)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·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, △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△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.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⊗ "AI학습을 시키려면 저작권 협의를 수십억번 하라고요?"
- ⊗ "소송 걱정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게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!"
- ⊗ "정당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리적 거래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!"

- (개선1) 이에 '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'을 마련(~11월)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,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(개선2)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·보상체계*를 연내 마련하여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.

* AI 업계-권리자간 협상·중재 지원을 위한 저작권 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,
AI 학습 동의여부를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

2.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

□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, 더 많이 개방한다.

- (현황)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, △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, △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. 또한, 가명정보 제공시에도 △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 △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.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⊗ "공공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데, 왜 매번 공개를 거절당하나요?"
- ⊗ "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를 공개한 공무원에게 왜 책임을 묻죠?"
- ⊗ "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잘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요?"

- (개선1)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‘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, ‘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’을 9월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.
- (개선2) 또한, 판결문·공공저작물(예: 공개된 국가고시·자격증 문제 등)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,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.

< ② 자율주행모빌리티,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>

1.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

□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.

- (현황) 업계는 자율주행차·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·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, ‘개인정보보호법’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.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⊗ "자율주행 원본영상 일일이 모자이크하다가 언제 기술선진국 진입하나요?"

- (개선)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‘개인정보보호법’, ‘자율주행 자동차법’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.

2. 자율주행 실증 확대

□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.

- (현황)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, 미국·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·운행·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.

* △(지역) 소규모 지구·노선 중심 △(운행)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모드만 허용
△(행정) 지자체 신청(연 2회) 후 국토부 심의·지정 등 시간 소요

【현장의 목소리】

☹ "자율주행차를 더 넓은 곳에서 시범 운행하고 싶어요!"

- (개선)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△노선·지구 → 도시 단위(중규모 지방도시 등)로 실증구역 확대(공모) △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하고, △업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△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,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.

3. 생활·산업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

□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·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.

- (현황) 민간 전문가 등은 국내·외 로봇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, 기존의 산업 기준과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*되어 있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.

* (예) (주차로봇) △설치장소 규제 △관리인 상주 의무 △주차구획 크기 규제
(건설로봇) △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
(실외이동로봇) △인증 안전기준 심사에 2개월 소요 △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사 요구

【현장의 목소리】

☹ "편리한 로봇, 다양한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!"

- (개선) 앞으로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,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.

〈 ③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별 합리화 〉

□ 마지막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별 합리화를 추진한다.

- (현황)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△R&D·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△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·자본시장법·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△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등을 건의하였다.
- (개선)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, 경제형별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

〈 향후계획 〉

□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,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.

-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,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,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.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(기존은 국무총리·민간 공동위원장)하고,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,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송현규 (044-200-2396)
		담당자	사무관	신우철 (044-200-2397)
		담당자	사무관	박도연 (044-200-2416)
<공공데이터> <저작권데이터>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	책임자	팀장	박유리 (044-200-2911)
		담당자	사무관	유연석 (044-200-2912)
		담당자	주무관	김영길 (044-200-2449)
<로봇> <자율주행>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	책임자	과장	권대철 (044-200-2435)
		담당자	사무관	양희경 (044-200-2415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원 (044-200-2437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민 (044-200-2453)
담당 부서 <저작권데이터>	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	책임자	과장	최영진 (044-203-2471)
		담당자	서기관	김용수 (044-203-2476)
	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	책임자	단장	박승록 (044-204-72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영 (044-204-7244)
담당 부서 <공공데이터>	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장	전한성 (044-205-2461)
		담당자	사무관	배재완 (044-205-2469)
담당 부서 <데이터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	책임자	과장	이소라 (044-202-6290)
		담당자	사무관	위재승 (044-202-6293)
	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직동 (02-2100-3051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수 (02-2100-3052)
담당 부서 <자율주행>	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장	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서기관	이성훈 (044-201-3848)
담당 부서 <로봇>	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	책임자	과장	신보미 (044-201-3797)
		담당자	서기관	조광영 (044-201-3814)
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장	공 석
		담당자	사무관	권대현 (044-201-4980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, 제조SI 확산TF	책임자	과장	송영진 (044-203-4130)
		담당자	주무관	류재훈 (044-203-4315)
담당 부서 <기업성장 촉진>	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장	장보현 (044-215-4510)
		담당자	서기관	전성준 (044-215-4511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신 (044-215-4512)
담당 부서 <경제형발>	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	책임자	과장	박헌진 (044-215-46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기학 (044-215-4632)

- ① **저작권데이터** AI 업계에서는 공개적 정보의 TDM 요구가 지속 중인데, 현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?(문체부)

□ 공정이용 제도는 여러 조건*을 종합 판단할 때 그 조건을 만족하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 사용을 허용

*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 등(잠재적 가치 포함)

○ 이 제도 취지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목적

□ AI 학습데이터를 위한 공정이용 규정 적용은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판례와 학계 논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*

* 2025년 기준, 'AI가 합법적으로 구입,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경우'에는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, 불법 경로로 수집된 자료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공개

□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공정이용(제35조의5) 조항을 따르고 있으나 아직 AI 학습데이터용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구체적 판결은 없는 상황

<참고>

- (TDM-Text Data Mining)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패턴·관계·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행위

② **저작권데이터** '공정이용 가이드라인'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?(문체부)

- ☐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공정이용에 관한 국내외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계획
- ☐ 또한 공정이용 시에는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
- ☐ 이를 통해 AI 업계가 공정이용 적용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

③ **저작권데이터** 데이터 거래를 가로막는 현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?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은?(문체부)

- AI 업계와 권리자는 학습데이터 거래에서 정보비대칭 상황에 직면
 - 권리자는 AI 학습데이터 사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에 더하여, 학습데이터 거래 이후 콘텐츠 시장 침해를 우려하며 거래시장 공급에 소극적
 - 한편 AI 업계 등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물의 소유자 등 권리 정보 확보에 애로가 있고, 저작자를 찾더라도 거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호소
- 권리자와 AI 업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업 플랫폼(‘거래활성화 워킹그룹’)에서 상생 거래 모델을 모색할 계획
- 또한 AI 업계가 권리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
 - 중소 AI 업계와 저작권자간 이용계약의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

④ **공공데이터** 현행법상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?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은?
(행안부)

- 「공공데이터법」은 비공개 범위에 대해 「정보공개법」 비공개사유*를 인용하고 있는데,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「공공데이터법」과 「정보공개법」간 비공개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음

* 의사결정 중인 정보,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, 영업상 비밀 등 8개 비공개사유

- 추가로,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'가명처리 제공 근거'도 신설할 계획임

* (참고)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

법령명	주요 내용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	• 「공공데이터법」 제17조에 따라 「정보공개법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에서 제외됨 1. 타 법령에 따른 비밀·비공개 정보 2.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 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. 진행중인 재판·범죄예방·수사·공소의 제기 및 유지·형 집행·교정·보안처분 관련 정보 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및 의사결정·내부검토 중인 과정의 정보 6.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7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8.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등이 우려되는 정보
공공데이터법	•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공데이터의 관리,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• 제17조(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)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. 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

⑤ 공공데이터 현행법상으로도 개인정보 포함된 가명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, 왜 현장에서는 가명처리가 어려운지?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?(개보위)

-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AI 학습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('20.8~)되었으나,
 -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, 복잡한 절차, 적정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활용 주저
- 이에,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'가명정보 제도·운영 혁신방안'을 마련(9월중 발표 예정)
 -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쏴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('26.上),
 - 데이터 위험도 수준에 따라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·간소화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음('25.12)

⑥ 자율주행 학습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원본 영상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는지? 대책은 무엇인지?
(국토부·개보위)

- 보행자 행동패턴 분석*을 통해 시스템의 인식률을 개선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(얼굴정보 등) 활용이 불가피

* 보행자 얼굴정보(눈·코·입 방향정보 등)로 미래 동선 예측·대응 가능

- 일반적 영상보다는 보행자·사고·교차로·주차장이 찍힌 블랙박스 정보 또는 특수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 등이 학습 활용도가 높음
- 그러나 일반인의 얼굴, 위치, 사적공간 등 민감한 개인의 일상이 포함될 수 있어, AI나 자율주행 학습에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설계 필요

- 자율주행 기술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은 허용하되, 기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강구
- 최소한의 안전 장치 및 사후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자율차법」 등 개정을 통한 안전한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 추진 중

⑦ 자율주행 실증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현재 47개소인데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? 실증 구역 범위 확대 계획이 있는지?(국토부)

- 그간 시범운행지구는 노선 중심으로 지정·운영되었으나 업계가 도시단위 대규모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, 데이터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구 대폭 확대 필요
- 아울러, 대규모 차량 양산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계 (스타트업 중심)에 차량개조 비용 지원 등 병행 추진 계획

※ 참고자료

-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개요
 - (개요)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자체의 운영성과·실적 등 평가
 - (평가대상) 평가 시점 기준으로 1년이상 운영된 시범운행지구
 - (평가기준) 지자체별 재정적·제도적 지원실적,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, 안전관리·갈등관리 실적, 자율주행 도입확산 효과 등 평가

⑧ **로봇활용** 건설로봇, 주차로봇 활용 및 안전 기준에 대한
현행 법령과 규제는? 산업 및 생활현장에 로봇 도입과
상용화를 위한 앞으로의 규제 정비 계획은?(국토부)

- 불도저, 굴착기 등 기존의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는
건설로봇은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
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로 허용 가능하며
 -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신규 건설로봇은 기술 도입 상황,
유형, 안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전 기준 등을
정비해나갈 계획임
 - 아울러, 건설로봇을 포함한 스마트건설에 대한 정의와
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*을 추진 중임

* 송석준 의원 발의('24.12), 손명수 의원 발의('25.2)

- 현재 주차로봇에 적용중인 기준이 사업 활성화에 저해가
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
 - 주차로봇에 적용하는 주차구획 크기*, 입고 가능 차량 제원**
등 적용기준과 관련 안전기준***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

* 주차구획 크기는 일률적으로 너비 2.3미터, 길이 5.3미터이나, 경형자동차
주차시 공간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유연하게 개선

**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성을 고려 입고 가능 차량무게(2,200kg 이하)가
제한되나, 주차로봇은 3,400kg까지 주차 가능하므로 기준 개선

*** 주차로봇 활용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 가능토록 주차장내 사람감지 등
비상시 로봇 정지, 로봇간 충돌방지 등 안전기준 마련

□ 개 요

- **(개발)** 기술발전에 따라 효율적이고, 안전한 주차를 위해 민·관 협업으로 주차로봇을 개발*하고,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('20~'22)

* (주)마로로봇테크, 경기도 부천시, 인천 부평구 공동

- **(주차방식)** 주차로봇이 차량을 탑재한 운반기를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주차구획으로 이동·주차



<주차 로봇(나르카)>



<차량 탑재>

- **(주차로봇 제도화)** 주차장 안전도 확보 및 주차로봇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지능형 주차장치(주차로봇)를 제도화*('22.9)

* 지능형주차장치 정의·안전기준 등 신설(「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규정」(국토부고시))

□ 기술 동향

- **(기술 동향)** HL로보틱스(주), 현대 위아(주) 등 국내 업계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차로봇을 개발·상용화 준비 중



< HL로보틱스 개발 주차로봇 >



< 현대위아 개발 주차로봇 >

